

제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11052 판결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12.7.

판결선고 2018.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61,111원과 이에 대한 2016.10.4. 부터 2017.5.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그 조합원인 건설업체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서귀포시 예래.대륜 하수관거 정비공사(3공구)' 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2016.4.25. 주식회사 명도건설(이하'명도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¹⁾
토공사	2016. 4. 25. ~ 2016. 11. 18.	424,3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70,868,000원
상하수도공사		196,430,000원
합계		791,668,000원

다.이 사건 공사계약 진행 과정에서 명도건설은 피고가 발생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3억 4,900만원의 선급금을 받았다.

보증서 발행일	선금금 지급일	공사내역	보증금액
2016. 5. 26.	2016. 5. 30.	토공사	140,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60,000,000원
		상하수도공사	70,000,000원
2016. 6. 15.	2016. 6. 15.	토공사	43,0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7,000,000원
		상하수도공사	19,000,000원
합계			349,000,000원

라.원고는 기성금으로 합계 248,776,500원을 아래와 같이 명도건설에 지급하였다(공사 발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명도건설에 기성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공사명	원고 직접 지급	발주자(제주특별자치도) 직접 지급 기성 노무비	합계
토공사	82,370,000원	60,505,500원	142,875,5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2,650,000원		12,650,000원
상하수도	27,570,000원	65,681,000원	93,251,000원
합계	122,590,000원	126,186,500원	248,776,500원

마.그러나 명도건설은 2016.9.22. 이후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와 명도건설은 2016.10.4.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되 아래와 같이 기성 공사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공사명	최종 정산 기성금
토공사	141,389,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34,310,000원
상하수도공사	86,634,000원
합계	262,333,000원

2.판단

가.선급금 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선급금 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명도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합계 349,000,000원 중 정산금으로 충당된 나머지 금액(이하 '미정산 선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반환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이후 명도건설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면서 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서 미정산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구체적인 보증금 지급액의 범위

1)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제33조 제7항에서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선급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의 선급금보증약관 제2조 제2항은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경우 선급금 지급 시의 계약금액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앞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미정산 선급금을 산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선급금 지급액: 349,000,000원

= 토공사 183,000,000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77,000,000원 + 상하수도공사
89,000,000원

○ 정산금 총당액: 109,563,312원

= 토공사 61,611,840원²⁾ + 철근콘크리트공사 5,700,599원³⁾ + 상하수도공사
42,250,873원⁴⁾

○ 미정산 선급금: 239,436,688원

= 토공사 121,388,160원⁵⁾ + 철근콘크리트공사: 71,299,401원⁶⁾ + 상하수도공사
46,749,127원⁷⁾

2) = 183,000,000원 × (142,875,500원 ÷ 424,370,000원)

3) = 77,000,000원 × (12,650,000원 ÷ 170,868,000원)

4) = 89,000,000원 × (93,251,000원 ÷ 196,430,000원)

5) = 183,000,000원 - 61,611,840원

6) = 77,000,000원 - 5,700,599원

3)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총당되고(대법원 1999.12.7.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한편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사 포함된 경우에 도급인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면 이는 그 실질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미정산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41697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한하여 기지급 기성금으로 총 12,650,000원이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기지급 선급금 중 5,700,599원이 기성 공사대금으로 함께 충장되었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 정산 기성금으로 위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34,310,000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5,959,410원(=34,310,000원-12,650,000원 -5,700,599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서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부분에 대한 미정산 선급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미정산 선급금: 71,299,401원
- 공제 결과: 55,340,000원(= 71,299,401원 - 15,959,410원)

나아가 원고가 명도건설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사실 또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공제되고 남은 전체 미정산 선급금에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20,316,117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미정산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0,316,117원[= 223,477,287원(토공사 121,388,160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55,340,000원 + 46,749,127원) × 1/11]
 - 공제 결과: 203,161,170원(= 223,477,287원 - 20,316,117원)
- 결국 위와 같이 계산한 피고의 최종 보증금 지급액은 203,161,170원이다.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3,161,17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 해지일인

2016.10.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5.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서 판 사 김○○ 판 사 서○○